
 ◆ 政府 施策 ◆

輸入先 多邊化 品目 일부 해제

— 通産部, 하반기 부터 21개 품목 해제 —

하반기부터 현행 204개 수입선다변화품목 가운데 17개 품목은 완전해제되고 충전식 드릴(HS 8508 80,000)등 4개 품목은 부분해제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자유로워진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對日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등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WTO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무역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연초의 26개 품목 해제에 이어, 이번에 다시 추가로 21개 품목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1995-60호, '95. 7. 1)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번 수입선다변화품목 추가해제와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즉 장기간 지정돼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거나 현재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또는 일본으로부터 예외수입이 많거나 제3국 수입이 과다한 품목 등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서 지정실효성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 추가해제 조치는 지난 93년 7월에 마련된 현행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침에 덧붙여 추가로 해제되는 것인 만큼 WTO체제 등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부응한다는 정부의 의지표명과 함께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의 추가적인 축소 개선노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관련업계에 대해서는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는 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경쟁력 제고노력을 촉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향후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과 관련, 93년 7월의 당초 방침대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매년 10%씩 해제해 나가되 대일무역적자 등 국제수지 개선상황, 우리산업의 경쟁력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해제폭을 조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신축성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수입선 다변화 품목(전기 관련 품목)

H S	품 목 명
8502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발전 세트
13 101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400KW에 상응하는 것 이상 750KVA 이하의 발전세트
20 10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이하의 발전세트
8504 40 2010	○ 무정전 전원장치(단상 0.5KVA 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의 것에 한함)
40 2090	○ 전동기속도제어장치(삼상 0.5KVA이상 400KVA 이하의 것에 한함)
8508 10 0000	○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는 제외
8508 20 0000	○ 전기톱
80 0000	○ 가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합마, 고주파전동공구 및 충전식드릴은 제외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50 9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전압 600V 이하 용의 정격용량 375KW 이하의 것)
8544 11 1000	○ 절연도료 피복권선용 전선
20 0000	○ 동축 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
60 3090	○ 전압 100KV 초과외 기타전선. 다만, Bus Duct는 제외

■ 국산개발 대상품목 및 부품수입 추천기관

추천기관	국산개발대상품목	
	HS	품 목 명
한국전기공업진흥회	8502	압축점화식의 발전세트
	8504	무정전 전원장치,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8508	수지식 전동공구
	8536	전자개폐기

산업지원자금 기능별 통폐합

— 통산부, 「공업발전기금」등 내년부터 5개로 재편 —

통상산업부는 현재 11개에 이르고 있는 통산부 소관의 각종 산업지원관련기금 및 자금을 기능별로 5개로 통합·단순화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수요자인 기업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WTO체제 출범 등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산업지원관련기금 및 자금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정경제원과 협의, 이를 통합·단순화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통산부 소관 11개 기금 및 자금 가운데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개발·첨단기술개발자금 등 기술개발관련 모든 기금 및 자금은 가칭 '산업기술자금'으로 통합된다.

통산부는 기술개발 단계별로 유기적인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산업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통근대화자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중 환경관련 자금은 공업발전기금에 흡수·통합되고 공업발전기금의 명칭은 가칭 '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된다.

산업기반기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물류·환경·입지·인력양성·표준화·정보화·디자인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자금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기금 및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일원화된다.

이 자금은 창업지원·구조개선·공동사업·지방중소기업육성 등의 사업에 대해 중점 지원되며 자금지원절차·지원조건 등도 정비될 예정이다.

통상부는 그러나 수출보험기금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원사업의 성격상 현행과 같이 별개의 기금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현행 복잡·다기한 기금 및 자금을 이같이 기능별로 대분류해 단순·통합화할 경우 △경기상황에 따른 신속적 자금운용이 용이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유사자금의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등 자금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특정산업지원 또는 일반금융성격의 자금을 축소·정비함으로써 절감된 재원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물류·입지·인력 등 산업인프라에 대한 지원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지역수혜성 사업의 지방비 연계도입 확대로 지역산업정책에서 地自體의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통산부는 이같은 기금 및 자금 개편방안은 내년도 예산편성시부터 반영하고 공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관련법 개정은 96년 예산 부수법안으로 일괄처리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산업지원 재정자금 개편내용

용도	현행	개편
기술개발지원	·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공통애로·중기거점기술개발) ·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기술인력·정보화·표준화등) · *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개발·첨단산업기술개발	산업기술자금
산업기반조성	· * 공업발전기금중 공장입지·공해방지사업등 · 유통근대화자금(공동집배송·유통정보화등) · *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환경)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 농공단지입주기업자금 ·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설비)	중소진흥기금
보험·공제사업	· 수출보험기금 : 1,000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200	현행유지

* 표시는 동일한 기금으로 여러용도로 지원되고 있음(자료 : 통상산업부)

資本財產業 육성을위한 租稅減免規制法 개정

－ 기술개발준비금 積立限度 확대 －

자본재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가 5%로 상향 조정되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기간이 7년으로 연장된다.

租減法 개정안은 우선 현재 일반산업은 수입금액의 3%, 기술집약적 산업(기계·전자·전기·항공·신소재·정보산업등)은 4%로 돼 있는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자본재 산업에 대해서는 5%까지 확대해 주도록 하고 있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기업이 기술개발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損費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자본재 산업에 대해서는 7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기술인력개발비는 지출액의 5%(중소기업 15%) 또는 증가지출액의 50%범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과세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最低限稅(소득의 12%)에 묶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해로 이월시켜 이용토록 허용하고 있는데 자본재 산업의 이월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 것은 기술인력개발비 부담이 크고 효과가 나타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확대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은 개정 조감법 공포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 내달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본재산업의 중소기업 현장기술인력에 주어지는 소득공제는 근무연한이 △3년이상이면 10% △7년이상이면 20% △12년이상이면 30%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이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자에 국한된다.

정부는 기업이 자본재 생산과 기타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공장단위로 보아 주생산품이 자본재인 경우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본재를 생산하는 공장과 기타재 생산공장·본사등을 전출입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입사때부터 적용하되 자본재공장에서 받은 급여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國產品 구매 금융·稅制 지원 폐지

— '97년까지 6종 단계 폐지 —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국산품우대나 수출지원을 위한 세제·금융지원제도 6종류를 오는 97년까지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무역금융과 수출손실준비금등 수출지원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고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등 국산품을 외국제품보다 우대하고 있는 제도는 국산과 외국산에 대해 동등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국산설비구입때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면서 외국산설비는 투자액의 3%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를 97년까지 전면 개편 국산및 외산을 차별치 않고 투자금액의 5%안팎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 수출지원 및 국산품 우대 폐지계획

종 류 및 폐 지 시 기	비 고
<세제지원> · 수출손실 준비금(97년) · 해외시장 개척준비금(97년) · 투자세액 공제 제도 ▲ 합리화시설투자, 기술개발인력투자(연구·시험시설포함)(96년)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특정설비투자(에너지, 광산, 환경, 산재)(97년)	※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국산 외산 동등 대우
<금융지원> · 중기기반조성자금중 수출 설비자금(97년) · 무역금융(97년) · 정보통신기금중 국산주전산기 지원(97년)	※ 中企자금과 무역금융은 금리자유화와 정부지원축소로 사실상 폐지

전력자원 따로 없다 절약할 때 지원된다.